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886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1년 10월 15일
- 회 부 일 : 2021년 10월 20일

2.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수수료 납부 시 수입증지 납부 우선 규정을 변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유가족을 추가함(안 제6조).
-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우리시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수수료 금액을 '수수료 없음'으로 변경함(안 별표 제2호다목).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21. 7. 22.~8. 11.)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의 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까지 수수료 면제를 추가하며,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관련 수수료 일부를 삭제 하려는 것임.

* 관련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본 조례에 따른 2020년도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징수금액>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	종수	담당부서	'20년 징수금액(원)
1	제증명 확인 발급	6	시민봉사담당관	59,786,620
2	행정정보의 공개	45		
3	개인정보의 보호자료	3		
4	시립대학교 증명	16		
5	승강기 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 등록	6		
6	전기공사업 등록	5		
7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감리업 등록	8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3		
9	각종 인허가 신고 신청 등	4	자산관리과	277,150
10	택시미터수리검정 수수료	3	품질검사소	27,498,000
11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5	한강사업본부	0
12	의료유사업자 관리	1	보건의료정책과	0
13	체육시설업 관리	8	체육정책과	0

나. 수수료 납부 방법 확대(안 제4조)

- 안 제4조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수립(지방자치분권실, 2020.12.)하여, 4가지 유형, 1,174개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비하도록 통보(자치법규과-18877, 2020.12.4.)한 바 있고,

〈 정비대상 유형 〉

- 유형 1.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민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유형 2.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민원처리법과 달리 정한 경우
- 유형 3.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통지를 생략하도록 정한 경우 등
- 유형 4.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을 의무 또는 원칙으로 정한 경우

- 이 중에서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거나,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 제4조를 개정토록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음.

- 현행 본 조례 제4조에서는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수입증지요금계기나 자치구 수입증지 납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안 제4조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서울특별시</u> <u>수입증지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자치구</u> <u>위임사무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 수</u> <u>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u> <u>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정보</u> <u>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u> <u>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u> <u>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u> <u>으로 납부할 수 있다.</u>	<u>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u> <u>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u> <u>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u> <u>으로 납부할 수 있다.</u>

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항 제11호 신설)

- 안 제6조는 현행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사항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안 제6조제1항 제3호의2 신설) 및 보훈대상자와 그들의 유·가족(안 제6조제11호 신설)까지 면제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 대상에 재해 부상군경·공무원 및 그 유족 등도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반영해 달리는 취지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5359, 2020.08.28.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1천 5백명 규모이며, 이에 대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증지수입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이유로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모의 파악이 곤란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감면 대상자 추가 효과에 대한 비용추계 또한 제시되지 않고 있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와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내용은 비용은 아니지만, 수입이 감소하는 사안임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감소되는 수입은 기술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
- 같은 조례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 관련)」에 따른 2020년 수수료 수입은 총 87백만원으로 5억원 미만임.

< 본 조례안 수수료 감면 추가 대상자 현황 >

('21.10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본인	유족
계	1,498	1,182	316
지원대상자	계	391	314
	지원순직군경	28	0
	지원공상군경	283	270
	지원순직공무원	28	0
	지원공상공무원	52	44
보훈보상대상자	계	1,107	868
	재해사망군경	171	0
	재해부상군경	902	855
	재해사망공무원	21	0
	재해부상공무원	13	13

(출처: '21년 10월말 기준, 국가보훈처 통계자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u>3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u>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 ></u>	<u>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수수료 금액 개정(안 제3조 별표 제2호다목 1), 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판매업이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본 조례 별표*에서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분야별 수수료를 규정하고 제2호다목에서는 석유 또는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 3종의 등록신청과 수수료에 대하여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본 조례 별표 제2호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3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 다만,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별지서식*으로 본 조례 별표의 3종에 수수료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규정해오다가, 규칙 개정(2017.10.19.)을 통해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본 조례로 관련 수수료를 규정한 3종 중 2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없음’으로 개정한바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 수수료 금액 관련 발췌

: 별지 제6호서식 -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의 조건부 등록 신청 - 수수료 없음

: 별지 제10호서식 -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의 조건부 등록 신청 - 수수료 없음

: 별지 제31호서식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조건부 등록 신청 - 조례로 정한 금액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안전부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하여,

*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598호, 2021. 4. 6., 일부개정]

-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수수료 등 종전에 조례로 정하여 징수해 온 수수료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서 삭제하고,
-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통보(지방소득소비세과 -1124, 2021.4.8.)에 따라, 안 제3조 별표 제2호다목은 관련 수수료 금액을 행정안전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관련)</p> <p>1. 공통수수료</p> <hr/> <p>2. 분야별 수수료</p> <hr/> <p>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3종)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제1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 <th>단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td> <td>1건</td> <td>30,000원</td> </tr> </tbody> </table>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p>[별표]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제3조관련)</p> <p>1. 공통수수료</p> <hr/> <p>2. 분야별 수수료</p> <hr/> <p>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제1항</p>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수료 징수대상사무</th> <th>단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td> <td>1건</td> <td>수수료 없음</td> </tr> </tbody> </table>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수수료 없음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 액											
1)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수수료 없음											

현 행			개 정 안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수수료 없음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대리점)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 다만, 본 수수료의 근거법인 석유사업법(제41조)에서 해당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된 운영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해당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본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행정입법으로 인한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정행태라고 할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칙 개정의 취지는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석유관리원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서식상' 규정한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질의 회신*한바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질의 회신, 석유산업과-1197(2021.7.6.)

- 일반 · 용제대리점 및 부생연료유 판매소는 신규 등록 및 휴 · 폐업이 반복으로, 관리부실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17년 기존 시 · 도의 등록업무 중 신청접수, 신청내용 확인 등의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10호서식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석유관리원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서식상' 규정한 것입니다.
- 다만, 등록업무 중 일부를 위탁한 것으로 최종적인 등록 결정은 여전히 지자체가 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해당 "수수료 없음"의 규정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 수수료의 징수 여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수수료 금액 00만원"으로 개정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상위 법률로 위임된 조례 입법권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규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자치입법권에 따른 수수료 현행유지 또는 전국적 통일된 수수료 운용의 효용성에 대한 비교이익 분석을 통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수수료) ①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유 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124(2021.4.8.)

1. 우리 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일 '21.4.6.)하였습니다.
2. 시·도에서는 개정된 수수료 규정을 시·군·구에 전파하여 주시고, 개정된 수수료 규정을 반영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시·도(시·군·구 포함)에서는 조례 개정계획을 아래 서식에 따라 '21.4.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유사업법 관련 본 조례에 따른 2020년 수수료 징수금액>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건수	금 액(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7	210,000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0	0

마. 조례 시행시기(안 부칙)

- 안 부칙 제1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수수료 미적용 대상 2종에 대한 시행시기를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리 여부 통지를 받게 된 자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수리 여부 통지를 받게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